

이용자 계약에 관한 사항

-동행재가복지센터-

[계약기간 및 이용 절차]

(계약기간)

① 본 센터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에는, 당해연도 말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의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경,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센터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등을 포함한다.)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② 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 파악 기록(건강 상태, 개인 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 면접, 상담

③ 사정회의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 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 위험도 평가, 욕구사정

④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하여 서비스 제공

⑥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상태 변화 체크 - 방문 상담 관리

(계약목적)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토록 하고,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여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①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제공
- ② 계약서 체결을 통한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③ 명확한 안내와 충분한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 2023년도 노인 장기 재가급여 기본 수가(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15%	1,881,000	1,690,8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 감경대상자 본인 일부부담금

구 분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금 100분의 60 감경하는 자	재가급여	본인 6%	공단 94%
본인 일부부담금 100분의 40 감경하는 자	재가급여	본인 9%	공단 91%

◎ 원거리 교통비, 인지활동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목욕서비스 제공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 장기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액

방문 요양	구분	금액(원)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2023년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7.5%),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③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의무]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③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 센터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 ③ 센터 내 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④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③ 모든 어르신 들은,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 권리 설명 및 동의서 작성)

센터는 수급자와 계약체결 전에 수급자 권리와 장기요양 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1. 센터와 수급자(보호자)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맞춤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 상태, 장애, 경제 상태,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인 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센터는 수급자(보호자)의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센터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센터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센터 이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센터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센터 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협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센터 서비스 제공 기간 내에서 센터 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 기간 내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5일 이상 장기입원 하였을 때. 단,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